

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2010년도 행정사무감사

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(안)

2010. 11. 23.

**충청북도의회**  
(교육위원회)

##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안

1. 요 구 일 : 2010. 11. 30.(화) 충북교육청 행정 감사 시

2. 대 상 자

○ 증 인

- 충청북도교육감
-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(9명)

○ 참고인

-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전원(8명)

3. 장 소 : 교육위원회 회의실

4. 출석이유

민주노동당 당비납부 관련 징계처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 청취

5. 관련법령

◆ 지방자치법 제41조 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제④항,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◆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

-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·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◆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**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**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,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,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,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, 서류제출일,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